

# e-안심팩토링대출용 통합약정서(판매기업용)

## 용자상담 및 신청서

20      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본인확인및인감대조	담당	책임자	관리자	부점장

주식회사 **하나은행** 앞

귀행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입하고자 신청합니다.

신청인	(인)		주 소				
			(전 화)	( ☎ )			
사업자번호			설립일자				
(주민등록번호)			(생년월일)				
신청금액	금	원	기업규모	<input type="checkbox"/> 대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중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소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사업자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	
여신과목			상환기일	취급후    년    개월	업 종		
자금용도			상환자원 및 방법	주요제품			
사업실적	전 기	금기예상	재무현황(전기)		기타 특기사항		
매 출 액	백만원	백만원	총 자 산	백만원			
경상이익	백만원	백만원	자기자본	백만원			
당기순이익	백만원	백만원	순 부 채	백만원			
여 신 내 용	여신과목	한도금액	잔 액	여신기일	취급의견 :		
	신청분						
	합 계						
담 보 내 용	종 류	감정가	유효담보가	보존방법			
	유효담보가 합계			담보비율		%	
연대 보증 인	성 명	직장명(직위)	차주와의 관계	실재산	나이	보증종류	전화
용자가부 결정결과	가 · 부		부결사유	상담자	직 위		
	통지일 :				성 명		



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 “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” 및 “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”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.

# 매출채권(팩토링)거래약정서(e-안심팩토링대출용)

주식회사 **하나은행** 앞

20      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본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합니다)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매출채권거래를 함에 있어 “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”과 “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”이 적용됨을 승인하고, 다음 각조항을 확약합니다.

### 제1조 매출채권거래의 범위

- ① 이 약정에서 매출채권거래 라 함은 매출채권의 매입, 매출채권의 관리회수 및 전자방식 외상채권대출 거래를 말합니다.
- ② 은행은 본인을 위하여 제 1항의 매출채권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하여 이 약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③ 제2항에 의한 거래 범위 내에서 거래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은 은행이 택하는 것에 한합니다.

### 제2조 유사계약의 협의

본인이 은행 아닌 다른 사람과 이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여 은행이 약정의 목적달성에 지장 없음을 확인하고 동의한 후에 하기로 합니다.

### 제3조 매출채권매입 거래조건

이 계약에 의한 매출채권의 매입거래 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합니다. (거래조건이 수 개로 되어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“□”에 “√”표시합니다.)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여신과목 (여신종류)	외상매출채권매입(팩토링)
취급수수료	매출채권매입 건당      원
매출채권 양도 및 양도대전 지급시기	<input type="checkbox"/> 본 약정에 의한 여신거래기간 중 제5조에 따라 은행 앞으로 자동양도하기로 하며, 그 대전의 지급시기는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     )
양도대전의 지급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의 만기 결제대전으로 지급받기로 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     )
취급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매출채권매입대전의 만기입금시 차감 지급하기로 합니다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     )

### 제4조 매출채권매입 수수료

본인은 이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 매입거래에 대한 보수로서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제3조에서 정한 수수료 및 수수료 지급시기에 은행이 따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.

### 제5조 매출채권의 양도

- ① 본인은 이 매출채권 거래 약정과 관련하여 본인을 대리하여 거래처(매출채권의 채무자인 중심업체를 말하며 이하 “거래처”라 함) 앞 포괄채권양도 통지할 수 있는 대리권한을 은행에게 위임합니다.
- ② 이 매출채권거래 약정과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채권영세를 통보 받는 경우 해당 외상매출채권이 이 약정에 의해 채권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.
- ③ 은행은 외상매출채권 양도 통지서를 거래처에게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.
- ④ 은행은 제2항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있는 방식으로 매입한 후, 본인의 요청에 의해 전자방식 외상채권대출이 발행될 경우에는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니다.

### 제6조 매출채권의 회수 및 협력

- ① 은행은 제3조에 의하여 영수한 매출채권을 그 권리자로서 직접 관리 회수합니다.
- ② 제1항의 매출채권 회수에 있어서 거래처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은 그 회수의 시현에 적극 협력 하기로 합니다.

### 제7조 매출채권매입대전의 지급시기

본인은 은행이 제3조에 의하여 영수한 매출채권의 대전을 개별 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지급 받기로 합니다.

### 제8조 매출채권의 환매

- ① 은행이 제 5조 제4항에 의하여 전자방식의상채권대출이 수반되지 않고 매입한 매출채권이 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중도에 취소되거나, 거래처의 상환능력에 관한 사유로 말미암아 각기 상환기일에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거절될 때에는 본인은 은행에 대하여 그 매출채권의 환매의무를 지며, 즉시 자동환매되는 것으로 합니다.
- ② 은행이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전자방식의상채권대출을 실행하여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라도, 매입한 매출채권이 상품의 수량, 품질, 가격, 사후관리 등 상거래관계로 말미암은 사유에 의하여 지급 거절될 경우에는 당연히, 또 지급 거절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본인은 곧 매출채권의 환매의무를 지며, 환매절차 및 방법은 ‘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(기업용) 제9조 할인어음의 환매채무’를 준용하기로 합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매출채권이 환매된 때에는 그 매출채권을 본인앞으로 재양도하는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. 이 경우 매출채권 재양도에 관한 거래처와 통지는 본인의 요청 및 비용부담으로 은행이 하기로 합니다.
- ④ 본인은 제2항에 의한 환매의무를 진 경우 환매의무발생 이전에 은행으로부터 지급 받은 해당 매출채권대전을 곧 상환하기로 하며,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9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및 방법으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- 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관련하여 거래처와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해결할 책임을 집니다.





### 제17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

① 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. 그 밖에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.

구 분	20 .	20 .	20 .	20 .	20 .
부채비율	%	%	%	%	%
자기자본비율	%	%	%	%	%
( )비율	%	%	%	%	%
( )비율	%	%	%	%	%

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기로 합니다.

1. 합병,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, 임대
  2.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
  3.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
  4.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
  5. 기업구조 개선 작업(Work Out)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
- ③ 본인은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은행이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.
1.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
  2. 지배주주의 출자
  3.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
-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은행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.

### 제18조 자료의 제출 등

①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한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.

1. 매분기 : 부가가치세 신고서, 합계잔액시산표, 부채현황표,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 예상표 등
2. 매반기 : 반기결산보고서, 부가가치세 신고서, 합계잔액시산표, 부채현황표,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 예상표 등
3. 매 년 :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(결산재무제표), 연결재무제표,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, 주주명부, 정관, 근로소득세 징수액집계표, 사업계획서, 추정재무제표(3개년), 주요거래처연황,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(KS,ISO,특허권 등), 노사분규확인서, 기타 제품설명서, 동업계 참고자료 등
4. 수 시 : 합계잔액시산표, 부채현황표, 자금용도확인서류 등

② 본인은 은행이 본인에 대한 신용 평가 시 기업의 외환 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.

1. 외환 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 현황
2.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
3.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

### 제19조 협의사항

이 약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합니다.



# 추가약정서(판매기업용)

## (e-안심팩토링대출용)

주식회사 **하나은행** 앞

본인은 「전자방식 외상채권대출」을 위한 20\_\_\_\_\_년 \_\_\_\_\_월 \_\_\_\_\_일자 매출채권(팩토링)거래약정(이하 "원 약정서"라 합니다)에 추가하여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.

**제1조 (서류의 제출)** 본인은 대출신청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귀 행에 제출하기로 합니다.

- ① 제출서류  
가. 외상매출채권 대출신청서  
나. 본인 발행 세금계산서  
다. 기타 귀 행이 요청하는 서류
- ② 본인은 전산상으로 인하여 서류 전송 및 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기 ①항의 서류를 귀행의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기로 합니다.
- ③ 거래처(구매업체)가 전송하여 귀 행의 인터넷에 게시된 담보 외상매출채권 명세의 세금계산서 내역을 본인이 확인한 후 대출신청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상기 1항의 서류제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.

**제2조 (입금계좌 지정)**

대출금 또는 외상매출채권 만기시의 현금 입금계좌는 다음 계좌로 합니다.

계좌번호 :

예금주 :

**제3조 (개별대출의 실행)**

- ① 원 약정서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개별대출금은 INTERNET(인터넷) 등의 방법으로 귀행의 전산에 게시된 담보 매출채권(귀 행이 원 약정서 및 본 추가약정서에 따라 본인에게 취급한 대출원리금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귀 행이 본인으로부터 양도받은 본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으로서, 그 채권의 채무자인 \_\_\_\_\_(이하 "거래처"라 합니다)로부터 통보받은 구체적인 채권명세를 기초로 귀 행이 전산에 게시한 매출채권 내역을 뜻하며, 이하 "매출채권"이라 합니다)의 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한 후 개별적으로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대출받기로 하고, 귀행 또는 인터넷 등의 전산상의 사유로 해당일에 취급하지 못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대출받기로 합니다.
- ② 본인이 귀 행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담보 매출채권은 대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그 지급일이 180일 이내인 채권에 대하여만 대출을 신청하기로 합니다.

**제4조 (개별대출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)**

- ① 원 약정서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개별대출금의 상환기일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담보 매출채권의 변제기일로 합니다.
- ② 1항에 의한 개별대출금의 상환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담보 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귀 행이 동채권의 채무자인 거래처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아 충당하기로 하며, 거래처가 지급기일에 귀행에게 담보 매출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도 본인은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. 다만 원 약정서 제8조2항의 환매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의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.
- ③ 거래처가 지급기일에 입금(또는 결제)한 매출채권결제금액이 협력업체들(본인 포함)의 매출채권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대출 취급 분, 미취급분의 순서로 회수하여 만기도래 순, 접수일자 순,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상환처리하기로 합니다.

**제5조 (대출의 제한)**

- ① 본인이 신용정보 관리규약상의 신규여신금지 기업 또는 귀행의 내규에 의한 신규여신금지기업에 해당하거나 또는 전쟁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귀 행은 본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.
- ② 인터넷 등 장애나 은행 전산상의 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귀 행에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를 못하거나 기타 귀행 전산상의 장애로 귀 행이 대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본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.
- ③ 기타 귀 행이 채권양도통지의 법적효력이 발생되지 않아 제3자에 대한 귀 행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는 본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.
- ④ 원 약정서의 여신한도약정금액에도 불구하고 귀행과 거래처간에 체결한 '거래처의 협력업체들(본인 포함)에 대한 외상채권대출의 총 대출한도'를 초과하는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.

**제6조 (정보제공의 동의)**

본 약정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본인에 관한 기본정보 및 개별대출 실행내역등의 거래내역을 "거래처"에 제공함에 동의하기로 합니다.

**제7조 (면 책)**

- ① 제출서류의 허위, 위·변조,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본인의 부담으로 하며,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.
- ② 본 약정서의 거래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(손실부담 및 면책)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

**제8조 (상환 의무)**

거래처와 귀행 간에 사전에 협의한 인터넷뱅킹 등 기타 전산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명세 통보시 해킹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채권명세, 내용이 변경된 경우와 본인이 인터넷 또는 창구에서 대출 신청시 전산오류와 해킹 등의 방법으로 인하여 외상매출채권금액보다 대출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.

**제9조 (본 추가약정의 효력)**

본 추가약정, 원 약정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,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본 추가약정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원 약정,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의 순서로 적용합니다.



# 추가약정서(자동기한연장용)

## (e-안심팩토링대출용)

주식회사 **하나은행** 앞

귀 행과 20\_\_\_\_\_년 \_\_\_\_\_월 \_\_\_\_\_일 체결한 “매출채권(팩토링)거래약정서”에 따라 약정한 등 대출금의 여신기한 종료일 전까지 은행 또는 채무자 중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구매기업과 은행이 정한 기한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 이 경우 자동연장이라 함은 별도의 한도거래 기간연장용 거래추가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은행이 정한 최장기간(30년)내에서 자동연장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자동연장처리 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위 약정에 의한 대출이 대출기일 현재 연체중인 경우
2. 채무자에 대해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 ·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· 부도정보 · 관련인정보 ·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때
3. 거래처(구매업체)와의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.



#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(포괄계약)

## (e-안심팩토링대출용)

주식회사 **하나은행** (이하 "갑"이라 합니다)과 \_\_\_\_\_ (이하 "을"이라 합니다)은 을의 갑에 대한 매출채권거래를 위하여, 을이 \_\_\_\_\_ (이하 "병"이라 합니다)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등을 갑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

### 제1조 (계약의 목적)

갑과 을의 매출채권거래를 함에 있어 갑과 을 양 당사자 사이의 채권양도계약과 기타 그와 관련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### 제2조 (양도할 대상채권)

을과 병이 체결한 아래의 기본계약에 따라 을이 병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일체의 채권(이하 "대상채권"이라 합니다) 전액을 갑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.

대상채권의 범위	갑과 을 당사자 사이에 20____년 ____월 ____일 체결한 매출채권(팩토링)거래약정 및 추가약정(이하 "여신거래약정"이라 합니다)에 따라 갑이 을로부터 매입하는 일체의 외상매출채권
기본계약	물품 또는 용역등과 관련하여 을과 병이 20____년 ____월 ____일 체결한 _____계약과 현재 및 장래에 체결한(또는 체결하는) 일체의 계약 등 또는 병과 갑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을이 병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일체의 매출채권의 원인 행위 등

### 제3조 (대리권 수여 및 채권양도 등)

- 을은 이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을을 대리하여 병 앞 포괄채권양도 통지할 수 있는 대리권한을 갑에게 수여합니다.
- 이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병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명세를 통보 받은 경우 해당 외상매출채권은 이 계약에 의해 채권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.
- 갑은 외상매출채권 양도 통지서 원본을 병에게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.

### 제4조 (을의 진술 및 보증)

- 을은 본 계약 체결시까지 대상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, 대상채권이 제3자에 의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사실도 없으며, 병으로부터 회수가 가능하고, 병이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을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등 갑이 을로부터 양수한 대상채권을 병에게 행사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진술하고 그 내용의 진정을 보증합니다.
- 제4조 제1항에 따라 을이 진술하고 보증한 사항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, 갑의 요청에 따라 을은 그 즉시 갑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체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을 상환하기로 합니다.

### 제5조 (변제충당 및 정산)

갑이 을로부터 양수한 대상채권을 병에게 행사함에 따라 병으로부터 받은 금원은, 우선적으로 을의 갑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, 남은 금원이 있으면 을이 지정하는 을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키기로 합니다. 단 을의 다른 채권자가 대상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하는 경우 그 압류된 금액 범위내에서 본계약에 의한 채권양도의 효력과 압류 등 효력이 선후가 결정될 때까지 남은 금원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.

### 제6조 (통지의무)

을은 물품의 수량, 품질, 가격, 사후관리 등 을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은 경우는 물론 사고, 전쟁, 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갑이 매출채권대전을 병으로부터 수령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.

### 제7조 (특약사항)

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,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매출채권(팩토링) 거래약정서, 추가약정서(e-안심팩토링대출용), 추가약정서(자동기한연장용),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(e-안심팩토링대출용)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,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 이를 약정함.	본인	(인)
---	----	-----

20 \_\_\_\_년 \_\_\_\_월 \_\_\_\_일

채 권 양 수 인 주식회사 **하나은행** \_\_\_\_\_

본인(채무자 겸 채권양도인) \_\_\_\_\_ (인)

주 소 \_\_\_\_\_ (인)

주 소 \_\_\_\_\_

주 소

업 체 코 드 : \_\_\_\_\_

중 심 업 체 명 : \_\_\_\_\_

중 심 업 체 사 업 자 번 호 : \_\_\_\_\_

